定款

열림용

주식회사 대한상인

정 관 제 1 장 총 칙

제 1조 (상호) 당 회사는 주식회사 대한상인(영문으로는 DAEHAN SANGIN Co., Ltd.)이라고 한다.

제 2조 (목적)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1. 화장품, 건강식품, 패션잡화 제조업
- 1. 건강식품, 패션잡화(의류 및 액세서리)도소매 및 수출입업
- 1. 식음료, 생활잡화 도소매 및 유통업
- 1. 청과, 신선식품, 농축산물 도소매 및 유통업
- 1. 통신기기 판매 및 유통업
- 1. 건축자재, 정유 수출입 및 유통업
- 1. 도서유통업
- 1. 프랜차이즈업
- 1. 공연 기획 및 제작업
- 1. 엔터테이먼트사업
- 1.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작업
- 1. 판촉물 제작 및 도소매 유통업
- 1. 경영컨설팅업
- 1.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
- 1. 소프트웨어 제작 및 공급업
- 1. 자료처리,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
- 1. 데이타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
- 1. 각호와 관련된 제품 및 상품 전자상거래업
- 1. 각호와 관련된 대행업 및 수출입업
- 1. 각호와 관련된 정보서비스업
- 1. 각호와 관련된 부대사업일체

제3조 (본점의소재지) 당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

제4조 (공고방법) 당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대한상인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

제 2 장 주 식

제5조 (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)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는 10,000,000주이다.

제 6조 (1주의 금액)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금 5,000원으로 한다.

제 7조 (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) 당 회사는 설립시에 8,000 주의 주식을 발행 하기로 한다.

제 8조 (주식 및 주권의 종류)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 주식과 종류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.

제 8조의2 (배당우선주식) (1) 당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(이하 "배당우선주식")을 발행할 수 있다.

- (2) 배당우선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.
 - 1.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%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.
- 2.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.
- 3.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.
- 4.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,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,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 다만, 발행시 이사회에서 신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다.
- (3)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5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동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.

제 8조의3 (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) (1) 당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(이하 "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")을 발행할 수 있다.

- (2)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의 주주는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.
- (3)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잔여재산분배우 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.
- (4) 위 각 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.

제 8조의4 (의결권배제주식) (1) 당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(이하 "의결권배제주식")을 발행할 수 있다.

- (2) 배당우선주식을 전항이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, 동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.
- (3) 위 각 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.

제 8조의5 (전환주식) (1) 당 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배당우선주식 및/또는 제8조의3에 따른 잔여재 산분배우선주식 및/또는 제8조의4 의결권배제주식을 발행함에 있어,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당 주식을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(이하 "전환주식")으로 정할 수 있다.

- (2) 전환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.
- 1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. 다만,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기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시 이사회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주권의 희석방지 관례를 감안하여 정하는 희석방지 조항에 의하여 전환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.
- 2.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전환청구기간(또는 전환기간)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.
- 3.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.
 - 4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 - 5.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(3)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, 전환조건,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 8조의6 (상환주식) (1) 당 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배당우선주식 및/또는 제8조의3에 따른 잔여재 산분배우선주식 및/또는 제8조의4 의결권배제주식을 발행함에 있어,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주식을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의해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(이하 "상환주식")으로 정할 수 있다.

- (2) 상환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.
- 1.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. 다만,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, 상환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청구기간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.

- 2. 회사는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되, 기배당분은 이를 차 감하고 지급한다.
- 3.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배당률, 이자율,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, 조정사유,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.
- 4. 상환청구기간 최종일에 상환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환하는 날까지 상환청구기간이 연장된다.
- 5.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,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- 6.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. 단,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,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.
- 7.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8.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상환할 뜻,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.
- (3) 제8조의5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 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

제 9조 (신주의 배당기산일) 당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,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의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

제 10조 (신주인수권) (1)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- (2)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
- 1.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 경영상 필요로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
 - 2. 신기술의 도입, 사업다각화, 해외진출, 원활한 자금조달, 전략적 제휴, 재무구조의 개선, 연구개발,

생산 판매 자본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(3)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 11조 (명의 개서) (1)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(2)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제 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1조의2 (명의개서 대리인) (1)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.

- (2)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- (3)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
- (4)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제12조 (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)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 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.

제 13조 (주권의 재발행) (1) 주권의 분할, 병합, 오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(2)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재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4조 (수수료) 제 11조 내치 제 14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15조 (주주명부의 폐쇄) (1)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.

- (2) 당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
- (3) 제 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

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수 있다.

이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준일의 貳주간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.

제 16조 (주주의 주소등의 신고) 당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, 주소와 인감을 제11조의2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위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 3 장 주 주 총 회

제 17조 (소집)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參월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 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.

제 18조 (의장)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.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된다.

제 19조 (결의)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 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.

제 20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

제 21조 (총회의 의사록)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임 원 과 이 사 회

제 22조 (이사와 감사의 원수) 당 회사의 이사는 일인이상, 감사는 일인 이상으로 한다.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 23조 (이사의 선임) 당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과 과반수로 선임한다.

제 24조 (감사의 선임)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 선임 의무 면제한다.

제 25조 (이사의 임기) 이사의 임기는 취임추 參년으로 한다.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전에 끝날때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 한다.

제 26조 (감사의 임기)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參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.

제 27조 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3일전에 각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.

제 28조 (이사회의 결의)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
제 29조 (이사회의 이사록) 이사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
제 30조 (대표이사) (1) 당 회사는 사장 壹인이상과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결정에 의하여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둘수 있고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명을 둔다. (2)사장,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중에서 선임한다. (3) 이사가 2인인 경우는 대표이사를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 (4) 당 회사의 이사가 3인이상인 경우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. (5) 사장은 당 회사를 대표한다.

제 31조 (업무집행) (1) 사장은 당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.

(2) 사장이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32조 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
제 33조 (보수와 퇴직금)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결의로 정한다.

제 5 장 계 산

제 34조 (영업년도) 당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35조 (재무제표,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) (1) 당회사의 사장은 정기총회회읠 六주간전에 다음 서류

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대차 대조표 2. 손익 계산서 3.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
- (2) 제 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사와 함께 정기총회의 壹주간전부터 망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 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중 대차대 조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6조 (이익금 처분) ①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

- 1.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拾분의 壹이상
- 2. 별도적립금 약간
- 3. 주주배당금 약간
- 4. 임원상여금 약간
- 5. 후기이월금 약간

제 37조 (이익 배당)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
부 칙

제 38조 (최초의 영업년도) 당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동년 01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39조 (발기인) 발기인의 성명, 주소와 그가 설립시에 인수한 주식수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

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대표자가 다음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.

2022년 1월 20일

주식회사 대한상인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청계산로686, 320호

개인정보유출주의 제출자:김갑천, 제출20차:2024.05.49 14:41, 출력자:김갑천, 다운定压일차:2024.10.14 15:35

대표이사 최병선

열림용